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17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염태영·차지호·김남근

황명선 • 박정현 • 한준호

강득구・이수진・김문수

민병덕 · 권칠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 도에 개정된 것임.

그러나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음.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가공된 제품의 경우,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 여부 등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가공한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당시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함.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원이 실기 각하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아울러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 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증거수 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 6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동차 제조업자등에 대한 특례) 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제조업자(이하 "자동차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해당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한다.

②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업자등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결함의 증명,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 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나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자료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의무 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

이 있고, 해당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법원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제출되어야 할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7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위하여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 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7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7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 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 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 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 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 실을 알려야 한다.
 -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

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를 말한다)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4조의2(자동차 제조업자등에 대한 특례) 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제조업자(이하 "자동차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해당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제조물의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제조물의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업자등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은당시에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신 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7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결함 의 증명, 해당 손해의 증명 또 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 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 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 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 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 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경우
- 2. 자료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 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 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 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해당 자료

<신 설>

<신 설>

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 려운 경우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 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 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법원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제출되어야 할 자료를 되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수 있다.

제7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제기된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 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 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 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 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 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 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 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 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 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
-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u><신 설></u>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 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 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는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 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 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 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 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 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 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신 설>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 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 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 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 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 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 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 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 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 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 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 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 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 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

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 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 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 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